

과세기간 ~	퇴직급여총당금 조정명세서	상 호
		사업자등록번호
		성 명

1. 퇴직급여총당금 조정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7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	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(⑩의 계)		②설정률	③한도액 (①×②)	비 고	
			5/100			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한도액	④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	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총당금	⑥연도중 총당금 환입액	⑦기초총당금 부인누계액	⑧연도중 퇴직금 지급액	⑨차감액 (④-⑤-⑥-⑦-⑧)
						(△)
	⑩추계액 대비 설정액 (⑩ × 설정률)		⑪퇴직금전환금		⑫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MAX(⑨-⑩-⑪, 0)	⑬누적한도액 (⑩-⑨+⑪+⑫)
한도초과액 계 산	⑭한도액 (③과 ⑬ 중 작은 금액)		⑮필요경비 계상액		⑯한도초과액 (⑮-⑭)	

2.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

구 분 계정명	⑰총급여액		⑱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		⑲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		⑳기말현재 종업원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	
	인원	금 액	인원	금 액	인원	금 액	인원	금 액
계								

작성 방법

1.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⑩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2.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총당금란에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"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"을 적습니다.
3. ⑦기초총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(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총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)을 적습니다.
4.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총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총당금, ⑥란의 기중총당금환입액, ⑦총당금부인누계액(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)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, 그 잔액이 음수(-)인 경우는 "0"으로 적고 ()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.
5.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⑳기말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

사업연도 개시일이	'10년 중	'11년 중	'12년 중	'13년 중	'14년 중	'15년 중	'16년 중
설정률	30%	25%	20%	15%	10%	5%	0%(폐지)

6. ⑪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.
7. ⑰총급여액란 : 계정명별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되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,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⑬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 및 ⑩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에 각각 적습니다.